#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429

발의연월일: 2020. 7. 28.

발 의 자: 김수흥·김윤덕·고용진

김진표・박재호・허 영

이용선 · 안규백 · 전용기

양정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수에 일정금액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위한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 3~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재 청년세대들은 일자리 부족과 비정규직의 증가 등 고용불안으로 청년실업률은 10.2%(2020년 5월 기준)에 달하고 있고,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이에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 향하며,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청년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기존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도 추가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29조의7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제2항의 표에 따른 공제율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기준 전체 거주자 중 청년근로자 비율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은 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근로자"를 "장애인 근로자"로, "400만원"을 "600만원"으로, "8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100만원"을 "1,300만원"으로,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3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 한 세액공제) ①·② (생 략) 한 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신 설>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제2항의 표에 따른 공제율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기 준 전체 거주자 중 청년근로자 비율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하여야 한 다. 다만, 그 비율은 100분의 2 를 한도로 한다. ③ ~ ⑦ (생 략) ④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7 항까지와 같음)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 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 -----2024년 12월 31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 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 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u>장애</u> 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생 략)

<u>.</u>
1 <u>장</u> 애
인 근로자 및 60세 이상 근로
<u> </u>
<u>600</u> 만원
<u>1,000</u> 만
<u> 원</u> <u>1,30</u>
0만원
<u>1,</u> 400만원
2. (현행과 같음)